

2024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5.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300억 원

※ 은행협조 용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붙임 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참고 1】**

-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 지원 제외대상 **【참고 2】**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
-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용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용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용자 신청업체	1.5%	1.5%	1.2%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9. 2.(월) ~ 9. 6.(금)
- 신청장소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북구 산업로 915, 1층)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 대환은 대출내역증빙(금융거래확인서) 포함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년)
 - ※ 2022년~2023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4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제외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의 업무대행 금지(용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용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2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용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 추천 후 추천금액의 3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용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 - 7289

【붙임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2024년)

접 수 번 호	기업종합지원센터-	접 수 일	
신청자금명	☐ 중소기업	☐ 기술혁신	☐ 경영혁신형
	☐ 조선사내협력사	☐ 자동차 업종	

※ 신청자금명에 “√” 표기 하시면 됩니다.

신청업체 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법인)번호	-
업 태		종 목	
전 화 번 호	() -	팩 스	() -
휴 대 전 화	- -	종 업 원 수	(상시 근로자) 명
도 로 명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직 책	이 메 일 휴 대 전 화	- -

자금 신청 내용

자 금 용 도	☐ 신규	☐ 원료구입(백만원)	☐ 기계보수(백만원)
	☐ 기존	☐ 노임지불(백만원)	☐ 기타(백만원)
		☐ 대환대출(기존대출 상환용)	☐ 연장(만기 6개월내 시자금 연장용)
신 청 금 액	금 원(W)		
상 환 계 획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1년거치 2년분할상환		

우대기업 확인

벤처	여성	전입	장애인	시산업대상 공예품대전	가족친화	창조경제 혁신센터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우수	모범장수	미래산업전환 및구조개선

※ 해당되는 우대기업 여부에 “√” 표기 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 미기재)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체크	제출서류	형태	부수	설 명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	“대표자 및 담당자 한하여 인정”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2~23) 확인(최근2년)	사본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하여 제출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2년)	사본	1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자가가장 시 기업체 확인, 세무대리인(신고인)확인
	사업장 확인서류(사내협력사 증빙서류)	사본	1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 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이차보전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사본	각 1	“ 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

※ 상기 신청서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관리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경 제 일 자 리 진 흥 원 장 귀 하

[붙임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신청금액	일금	원정(W	)
자 금 사 용 처(해당 내용에만 작성) ※ 양식 임의변경 불가			
1. 사업기간 : ~			
2. 자금용도 : ☐ 신규 운전자금 ☐ 기존 자금 대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유 의 사 항》 1.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FAX: 700-7139) ◦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또는 자금 사후관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u>회수</u> 또는 <u>중단</u> 될 수 있습니다. (자필 작성) 2.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3.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공장, 부지)매입비, 기계장치구입비, 유가증권 구입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확인			
은행명(지점명)/보증기관명(지점명)			직 책: 연락처: 성 명: (인)
담 보 조 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대 출 취 급 금 액	금 백만원		
상 담 일 자	20		
위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u>확인</u> 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절차에 동의 합니다. (자필 작성)			
신청인			①

※ 기존자금 대환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개인(법인)정보 수집 동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_____은(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개인(법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법인)정보 항목

- 업체현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직책·전화번호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상담기관 담당자, 상담기관 담당자 연락처
- 우대기업 확인 : 여성기업 유무, 전입전후사항, 장애인 등록증 등

2. 사용목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접수 및 심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추천서 발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신청 관리

3. 동의서 유효기간

이 동의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처리 기간동안 유효하며 개인(법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도 소멸됩니다.

4. 확인사항

개인(법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개인(법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인지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본인성명 _____(날인 또는 서명)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자는 "중소기업 지원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주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사업자가 보 통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흥렬 박생

- * 보유 저부가 없을 경우 수직하차 안함

대표자 (인)

【참고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술혁신기업

-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아래 해당기업
(단,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

분 야	해 당 기 업	세 부 내 용
신기술 제조업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조사시 신기술사업자로 확인된 제조업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업 ○ 연구성과를 기업화 또는 제품화하는 기업 ○ 기술협약에 의거 제품 및 공정개발하는 기업 ○ 기타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녹색성장 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 창업	지식문화산업(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산업발전법 제5조를 기초로 선정> ○ (지식기반 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이공계 쉼터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 45세이하인 기업	○ 신기술사업자
40·50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40 ~ 만 55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다만 상시근로자 없이 4인 이하가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신기술 사업자
첨단·뿌리산업 창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첨단산업) 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지식경제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 (뿌리산업) 중소기업청 선정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신성장 공동기준’의 9개 테마의 *품목(기술)인 경우
- 항목 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각 항목별 1개 이상의 판별요건 충족)

항목	판 별 요 건	판 단 기 준	
1	신성장산업 테마	분 야	품 목*
	①첨단제조·자동화		
	②화학·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지속가능		
	⑤건강·진단		
	⑥정보통신		
	⑦전기·전자		
	⑧센서·측정		
	⑨문화·콘텐츠		
2	①초연결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등의 네트워크 연결 여부	
	②초지능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연관 여부	
	③융합성	기존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여부	
3	①신사업창출	기존에 없던 사업의 창출 및 서비스 구현 여부	
	②신시장창출	기존에 기대하기 어려운 신규시장에 진입 또는 기존에 없던 시장 창출 여부	
	③시너지창출	2개 이상 개별 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창출 여부	

경영혁신형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유망창업기업 및 기술·지식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분 야		해 당 기 업																		
유 망 창 업 기 업	전문자격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증과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대학 교수* 또는 박사이거나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일로부터 과거 3년 내에 제조업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이디어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기술로 창업(예정)한 기업이거나,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나 기업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예정) 하는 기업 ■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기업		<table><tr><td>■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td></tr><tr><td>■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td></tr><tr><td>- 기술력 인정기업</td></tr><tr><td>- 부품·소재전문기업</td></tr><tr><td>-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td></tr><tr><td>-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td></tr><tr><td>-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td></tr><tr><td>-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td></tr><tr><td>- 기술관련 인증기업</td></tr><tr><td>- 집적시설 입주기업</td></tr><tr><t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td></tr><tr><td>■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td></tr><tr><td>■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td></tr><tr><td>■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td></tr><tr><td>■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td></tr><tr><td>■ 뿌리산업 영위기업</td></tr><tr><td>■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td></tr><tr><td>■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td></tr></table>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 아래 분야 해당기업으로 센터 확인증 소지기업

- 조선해양플랜트(에코십, 스마트십)
- 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
- 첨단의료자동화산업
- 안전산업

【참고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용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추천업체 평가항목

1. 평 점 (100점)

① 매출액 : 매출액이 **영세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20점)	제조업	10억 미만	20점	
		20억 미만	16점	
		50억 미만	12점	
		100억 미만	8점	
		100억 이상	4점	
	비제조업	5억 미만	20점	
		10억 미만	16점	
		30억 미만	12점	
		50억 미만	8점	
		50억 이상	4점	

② 상시 종업원 수 : 종업원 수가 적은 **소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상시 종업원 수 (20점)	제조업	5명 미만	20점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준
		10명 미만	16점	
		30명 미만	12점	
		50명 미만	8점	
		50명 이상	4점	
	비제조업	10명 미만	20점	
		20명 미만	16점	
		30명 미만	12점	
		40명 미만	8점	
		40명 이상	4점	

③ 업 력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업 력 (20점)		15년 이상	20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16점	
		5년 이상	12점	
		3년 이상	8점	
		3년 미만	4점	

④ 자금사용 횟수 : 자금수혜 신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2002. 7. 1이후 경영안정자금 수혜 횟수 (20점)	신규	20점	
	1회	16점	
	2회	12점	
	3회	8점	
	4회 이상	4점	

⑤ 재무 건전성 :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이하	10점	※ 제조업 용자제한 부채비율표 (중기부서관 정책자금지원 적용기준 준용) ※ 신규기업은 최하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이하	7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초과	5점	

⑥ 일자리 창출 : 근로자 고용신장 기업 보상

항 목		점수	비 고
일자리 창출비율	일자리 창출 비율 5% 이상	10점	※ 최근 3년평균 일자리 창출비율(창업 3년이내 기업은 2년 기준 비율로 산정, 신규기업은 최하점)
	일자리 창출 비율 3%~5% 미만	7점	
	일자리 창출 비율 3% 미만	5점	

2. 가 점 (20점)

① 인 증

항 목	점수	비 고
벤처기업	4점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내
INNO-BIZ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② 수 상

항 목	점수	비 고
대통령상	4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및 대표자명의로 한함)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3점	
기초자치단체장상	2점	

③ 우 대

항 목	점수	비 고
가족친화기업	4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확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본사가 보육입주 기관 내 소재
일자리창출비율 30%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최근 3년분 제출기업만 해당)
타 시·도 전입기업		법인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모범장수기업		모범장수기업 인증서(울산시)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사업재편 승인증서(산업부)
청년기업 ^{신규}		청년기업인증서 또는 대표자주민등록증

※ 청년기업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공동대표 허용

④ 지적재산권

항 목	점수	비 고
지적재산권 (특허보유 건수)	4건 이상	※ 국내/해외 포함, 이전 완료된 기술은 제외, 특허 등록기준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⑤ 사회공헌도

항 목	점수	비 고
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4점	매출액의 0.2 % 초과
	3점	매출액의 0.2 % 이하
	2점	매출액의 0.1 % 이하
	1점	매출액의 0.05% 이하